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52	"	1981. 6. 23	종재 김 준 성

각 안 「금융기관의 예금저축준비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의 예금저축준비에 관한 규정」을
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외관계 「환주은행법」 제 57 조 및 제 59 조
법기조항

제외취지 은행이응드 제고발상의 일환으로 저축예금 및
차계융합예금 증대를 적극 앙상함에 따른 수익악화를
보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충을
통한 은행의 대형화 및 국제화에 기여하고
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
함

참고사항 1 제의관계 법구조항

가. 한국은행법 제 57 조

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보유하여야 할 예금저축준비금의 최저율을
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
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금저축준비금의 물은 제 58 조에 규정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하
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석
용한다. 다만, 금융협동조합중앙회 및
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
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

나. 한국은행법 제 58 조

금융통화위원회는 제 57 조, 제 58 조
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647

1.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
금융통화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은행
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저축준비율의
결정.
2. 최저예금저축준비금의 100분의 25 까지
한국은행권으로서 보유하는 것의 허용.

648

① ① ① ①

② ① ① ②

2. 청 무 들

가. 지문상환 개요

나. 지문을 인화효과

다. 통화금융주이

라. 예금저축준비를 편전 주이

마. 주요국의 지문을 현황

바. 은행별 인허권금 및 시제금보유주이

사. 현금보유인허할 변경주이

「金融機關의 預金支給準備에 관한 規程」一部改正(案)

現

行

第1條 (名 略)

第2條 (預金支給準備金의 最低率)의 韓國銀行法 第57條 및 第59條에 의하여 各 金融機關이 保有하여야 할 預金 支給準備金의 最低率은 다음과 같다.

預 金 種 別	支 給 準 備 率
貯蓄性預金	10%
要求排預金	14%

② 農林協同組合中央會 및 農林協同組合會 小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에 대한 預金支給準備金의 最低率은 다음과 같다.

650

改

正

(案)

第1條 (現行과 相同)

第2條 (預金支給準備金의 最低率)의 韓國銀行法 第57條 및 第59條에 의하여 各 金融機關이 保有하여야 할 預金 支給準備金의 最低率은 다음과 같다.

預 金 種 別	支 給 準 備 率
貯蓄性預金	5.5%
要求排預金	5.5%

② 中小企業銀行, 農林協同組合中央會 및 農林協同組合會 水産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에 대한 預金支給準備金의 最低率은 前項과 率을 適用한다.

現 行			改 正 (案)	
	預 金 種 別	支給率備考		
農林協同組合中央会	貯蓄性預金	7%		
又、農林協同組合	要求掛預金	10%		
水産協同組合中央会	貯蓄性預金	5%		
又、水産協同組合	要求掛預金	8%		

② (省 略)

第3條 - 第4條 (省 略)

第5條 (現金保有 認許率) 金融機關 預金支給準備金中 22% 까지 韓國銀行券으로 保有할

651 个 및

② (現 行 斗 合 音)

第3條 - 第4條 (現 行 斗 合 音)

第5條 (現金保有 認許率) 金融機關 預金支給準備金中 25% 까지 韓國銀行券으로 保有할

个 및

現 行		改 正 (案)	
第6條 (省 略)		第6條 (現 行 斗 合 音)	
(新 設)		附 則	
		이 規程은 1981. 7. 1 (7月 上半月 支障対象預金)부터 施行한다.	

652